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년 8월 일
제 출 자 : 전수곤 의원 외6명

1. 개정이유

가. 심의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위원 일부를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정비하고, 심의회의 위원임명 또는 위촉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변경

나. 장애등급제 폐지로「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장애의 기준 삭제)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적용 법령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비

- 유족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 : 손자녀, 조부모 포함
- 장애의 기준 해당 법령 변경(안 제5조제1항)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장애의 기준 삭제)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나. 보상금 지급기준 구체화(안 제4조)

- “도의원 의정활동비” →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다. 심의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대상 정비(안 제9조)

- “의장” → “성주군의회 의원”으로 추천 대상 정비

라. 위원의 임기 변경(안 제11조)

- “연임할 수 있다.”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9. 8. . ~ 8. .(5일간)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부모”를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의원”을 각각 “경상북도 의회의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장애등급・・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사망 당시 의 유족”을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유족의 순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의회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본청 관련 실과장”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을 “성주군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의 직무상 상해 등의 인정범위 및 유족의 우선 순위 해당 여부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하며”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의원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같은 법 ---------- ---------- ---------- ---------- ----------.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3. ---------- ---------- ---------- 부모, 손자녀, 조부모----------.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 략)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②----------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1. ---------- ---------- 경상북도 의회의원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에 상당한 금액	2. ---------- 경상북도 의회의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장애등급・・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 의 유족	1. ---------- ----------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유족의 순위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2. ---------- 그 밖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 ----------.
1. 의회의원 중 1인	1. 의원 --------

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인	2. -- 소속 공무원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 성주군의회----------.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1. 제3조의 직무상 상해 등의 인정범위 및 유족의 우선 순위 해당 여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4. 그 밖의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성주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 하되, 한 차례만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의원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공무상 부상

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2. 공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3) 공무수행 중 습지·산지·초지(草地)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라. 근골격계 질병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공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사.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

1)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3.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질병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장해등급(제40조제1항 본문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 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중 한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고: 위 표에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